

2018년도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연구윤리 교육

발표자: 안이환(부산교육대학교)

2005년도 말에 발생한 황우석 교수의 연구부정행위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대응책 강구의 요구가 많았다. 한국에서는 2007년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최초로 만들어졌다. 2007년도의 지침은 연구윤리에 대한 초기 형태로 상세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몇 번의 부분 개정을 거쳐 2015년에 교육부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11.3.)”을 새롭게 만들어 제시하였다. 2015년도의 연구윤리 지침은 외국(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중국)의 것을 참고하여 서울교육대학교의 이인재 교수가 많은 부분을 집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연구윤리에 대한 해설서(2015)와 질문지 형태의 연구윤리 질의응답집(2016)을 제공하고 있다. 질의응답집은 해설서의 내용을 질문형태를 빌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책이다. 따라서 연구윤리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이해하고 싶다면 먼저, 연구윤리 해설서(2015)를 일독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설서의 표지와 목차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해설서(2015)는 8개의 장과 참고문헌 및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지침 개정의 필요성, 제2장은 지침의 목적 및 적용대상, 제3장은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제4장은 연구부정행위의 유형과 판단, 제5장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제6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 제7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제8장은 검증에 따른 조치를 담고 있으며 부록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개정 전문과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한 신규 대비표를 담고 있다.

연구윤리 질의응답집(2016)은 7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은 연구설계, 제2장은 연구수행, 제3장은 연구발표, 제4장은 저자표시, 제5장은 중복게재, 제6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 제7장은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를 담고 있다. IRB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서 피시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를 말한다. 식약처의 의약품 임상시험관리 기준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경험과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 중에서 두 명은 변호사나 종교인, 윤리학자 등 해당시험 기관과 관련이 없는 사람을 위원으로 뒤편해야 한다. 질의응답집(2016)은 해설서(2015)보다 현실적으로 연구수행 과정에서 저지르기 쉬운 실수나 연구윤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본 고에서는 질의응답집(2016)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줄여서 소개하기로 한다. 이러한 소개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는 연구자를 위한 윤리규정을 “初等相談研究(저널)”에 어떤 내용으로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할 것이다.

[참고]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는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를 전문으로 소개하기 위하여 해설서(2015)와 질의응답집(2016)을 pdf 파일의 형태로 학회의 인터넷에 올려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2015. 11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NRF**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Contents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제 1 장	지침 개정의 필요성 및 개요	
	1. 추진배경	2
	2. 외국의 현황	5
	3. 추진경과	12
	4. 지침 개정의 개요	16
제 2 장	지침의 목적 및 적용대상	
	1. 지침의 목적 (제1조)	22
	2. 적용 대상과 방법 (제2조, 제3조)	24
	3. 적용의 범위 (제4조)	31
제 3 장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1.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5조)	34
	2. 대학등 및 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 (제6조, 제7조)	36
	3. 연구윤리 교육 및 규정 마련 (제8조, 제9조)	39
	4. 연구윤리위원회 (제10조)	41
	5. 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제11조)	42
제 4 장	연구부정행위의 유형과 판단	
	1. 주요 외국의 연구부정행위 개념	44
	2.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유형 (제12조)	55
	3.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제13조)	83
제 5 장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의 권리 보호 (제14조)	86
	2.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제15조)	87



제 6 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1. 검증주체 (제16조, 제27조)	90
2. 검증 시 적용지침 (부칙 제1조, 부칙 제2조)	92
3. 검증원칙 (제17조)	94
4. 검증기간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96
5. 검증기구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32조)	97

제 7 장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1. 검증절차 (제18조)	104
2. 예비조사 (제19조)	106
3. 본조사 (제20조)	110
4. 판정 (제24조, 제25조)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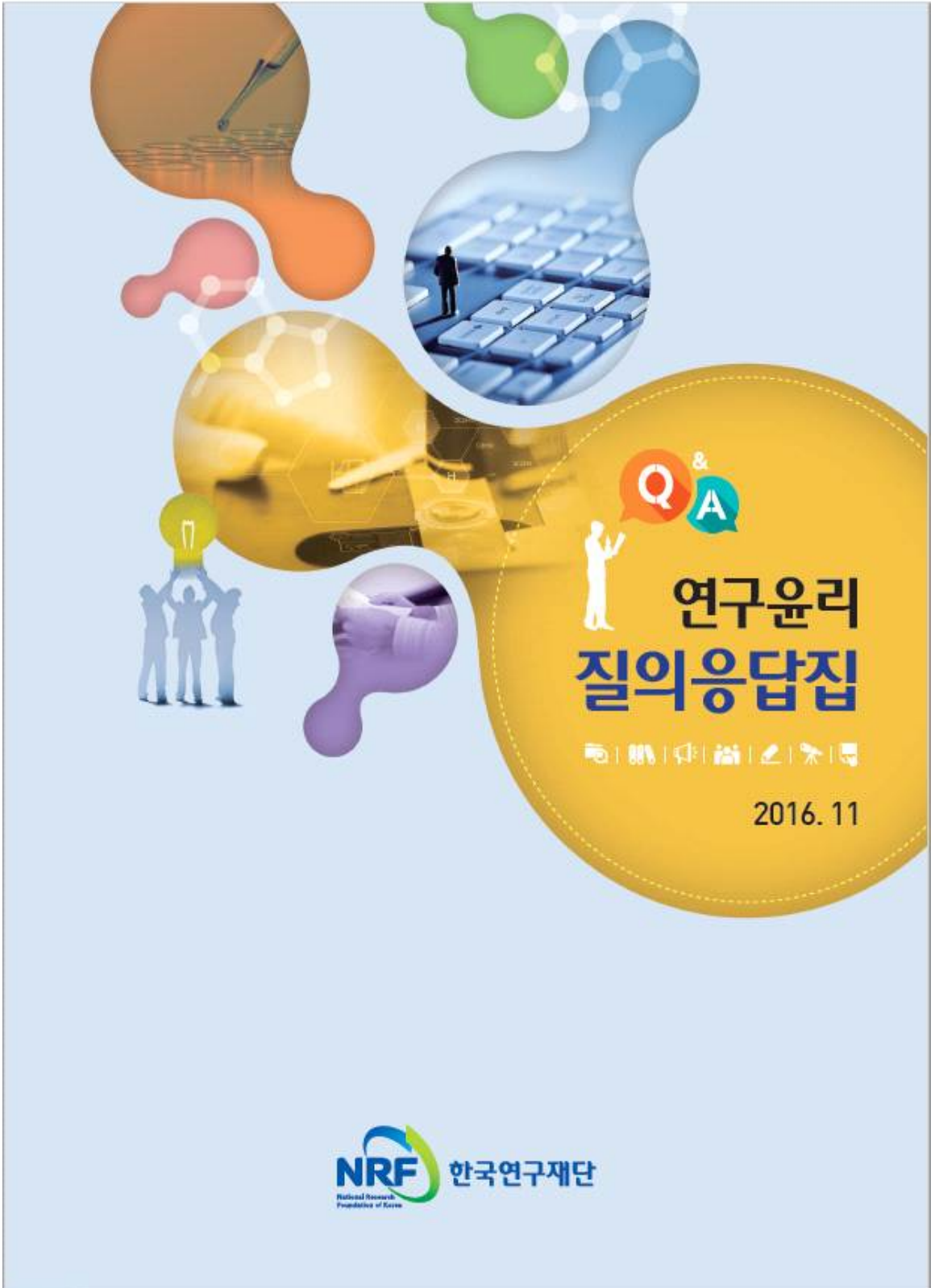
제 8 장 검증에 따른 조치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26조)	116
2. 조사의 기록과 공개 (제31조)	117
3. 조사결과와 보고 (제29조)	120
4. 조사결과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 (제26조, 제30조)	123
5. 조사결과에 따른 연구기관의 후속조치 (제26조, 제28조)	125

참고문헌	128
------	-----

부 록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전문	132
2. 주요 개정 사항 및 신·구 대비표	144
3. 올바른 인용과 인용 방법	158



Q & A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국립연구재단

2016. 11

제 I 장: 연구설계

1. 연구과제의 결과를 재사용한 학위논문의 작성이 가능한가?
 - ▷ 만일 이전에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있는 데이터를 학위 논문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이미 발표되었다는 출처표시를 해야 중복게재의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2. 공동연구에서의 연구설계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 ▷ 사전에 공동연구진 각자의 역할과 연구 성과물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며, 문서화 하는 것이 좋다.

제 II 장: 연구수행

5. 타인의 연구결과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한 연구 수행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 ▷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은 타인의 독창적인 표현에 한정되며 특정 도서 등의 창작물에 내재되어 있는 아이디어나 사상 등은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본 사안과 같이 특정의 도서에서 기술된 내용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도서에서 기술된 문장 등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그 내용을 모티브로 한다는 점만으로 저작권 이용 허락을 얻을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연구 결과물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후속 연구를 하는 과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인용하고, 이후 후속 연구의 진행 단계에서 원저자에게 동의를 얻고, 논문에도 밝히는 방법이다. 둘째, 원저작자의 저작물에서 특별히 인용하거나 차용하려는 바가 없다면, 원저작의 저작물과 별도로 일반화시키면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
6. 학술행사에서 구두발표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표절의 대상이 되는가?
 - ▷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보면,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연구 성과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하는 경우 표절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학술 행사에서의 논문 발표나 토론 및 좌담회, 워크숍 등에서 구두 발표를 통해 얻게 된 타인의 독창적인(독특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여 발표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출처를 적절히 밝혀야 연구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7. 설문조사로 수집한 연구데이터를 분리하여 각각 개별 논문으로 출판할 수 있는가?
 - ▷ 데이터의 분리(이른바 쪼개기 논문)는 데이터 분리의 정당성이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
9. 한 번의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에서 대상자를 분리하여 각각 별개의 논문으로 출판이 가능한가?
 - ▷ 만약 본 사례에서 같은 설문 항목을 두 개의 대상(초등학생, 중학생)에게서 확보하여 같은 연구설계, 내용, 결론 등의 내용으로 개별적으로 논문을 작성한다면 개별 논문의 가치가 있을지가 중요하며, 고의로 굳이 분리하지 않아도 되는 논문을 분리하여 지나치게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 작성되어진다면 중복게재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 중복게재를 판단할 때 학문 분야별 기준이 다소 다른 점이 있으므로 후속 논문의 투고 시에 이전 논문을 언급하면서 관련 설문 조사가 함께 이루어

어졌다는 것을 해당 학회에 알리면 학회에서 논문 심사 시에 유사성 판별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두 논문 간의 유사성을 배제하고도 개별 논문으로서의 독창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단순히 동일 시기에 수집한 설문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구윤리에 위배되거나 중복게재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가장 정확한 것은 현재 우려가 되는 사항에 대해 학회에 알리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다면 개별 논문으로의 분리 출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19. 인용표기만 있으면 표절이 아닌가?

▷ 논문이나 보고서로 이미 발표된 타인 및 자신의 연구 성과 중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활용하는 경우, 적절하게 출처표시를 한다면, 표절이나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표절이란 타인의 저작물에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중요한 연구 내용을 활용할 때 적절하게 출처표시를 하지 않아 생기는 윤리적이거나 법적인 문제를 말한다. 중복게재도 이미 발표된 자신의 이전 연구 내용의 일부든 상당 부분이든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지 않을 때 발생한다. 그런데, 타인의 연구내용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면서 가져다 활용했음지라도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인용(즉, 자신의 것이 부수적이고, 가져다 쓴 타인의 것이 주된 것이 되도록 활용하는 것)을 하였다면, 표절은 아닐지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출처를 밝히고 이후의 저작물에서 활용하였지만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이후의 저작물이 독자적인 연구 성과로서의 가치를 가진 부분이 없을 때는 ‘출처를 표시한 중복게재’에 해당되어 문제가 된다. 즉, 출처를 표시했음에도 문제가 되는 이유는 활용된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뭔가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독자들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절과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자신의 저작물에서 타인이나 자신의 중요한 이전 연구 성과를 출처를 밝히고 인용할 수 있지만 정당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20. 논문을 쓸 때, 표절 논란을 피하기 위해 어떤 선행 조치가 있어야 하는가?

▷ 많은 리뷰 (많은 검색을 통한 리뷰)

21. 재인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인용한 논문의 그림에 추가적인 설명을 넣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 1차 인용자를 통해 원문을 알게 되었으나 원문을 찾을 수가 없을 경우, 또는 원문을 연구자가 독해할 수 없어 1차 인용자가 직접 번역해 놓은 것을 가져다 쓰는 경우는 반드시 재인용 표시를 해야 한다. 재인용 표시 방법도 학문 분야별이나 학술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내문헌이나 외국문헌 모두 인용 연구논문의 연도와 인용 페이지를 제시한 뒤에 쉼표(.)를 하고 ‘재인용’이라고 표시한다. 참고문헌에서는 ‘재인용’이라는 표기없이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서지정보를 그대로 기록한다. 예를 들면, 연구윤리의 가치에 대해서는 김하늘(2015, p.13)이 ……라고 하였다(홍바다, 2016, p.35, 재인용). In lee’s argument (as cited in Kim, 2016) it is found that… 자신의 논문에 타인의 연구물 속에 있는 그림이나 표, 사진 등을 그대로 인용할 때에는 원문에 대한 출처표시를 정확히 해야 한다. 특히, 원저자의 그림이나 표에 대하여 연구자 자신의 관점이나 해석을 가미하거나 원하는 방향으로 약간 수정할 때에도 원본의 출처를 표시하고 이에 대하여 어떻게 수정되었고 연구자의 어떤 견해가 포함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23. 이미 나온 연구윤리 책자를 인용하여 연구윤리 관련 책자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가?

- ▷ 연구윤리교육과 같이 공익을 목적(비영리 목적)으로 이미 출판된 책의 내용을 출처를 밝히고 편집의 창의성이 가미되어 재구성한 책으로 만들어 활용하거나 또는 거의 동일하게 다시 제작하여(원본에서 명시한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한다는 문구 포함)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만일 거의 동일하게 다시 제작하고자 할 때는 가급적 원저자나 기관에서 허락을 받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 원저자의 허락 없이 측정도구의 수정은 가능한가?

- ▷ 연구자가 활용하고자 하는 심리척도(검사도구 포함)가 자신이 개발한 것이 아닌 타인이 개발한 것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원저자에게 허락을 받고 해당 내용에 대해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여야 한다. 2차문헌에 인용된 척도(원저작자가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도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구하기 어렵거나 2차문헌에 인용된 척도가 원저작자의 것과 동일할 경우(이때 2차문헌의 저자가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출처와 2차문헌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2차문헌의 저자가 원저작자의 도구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변화시켰거나 새로운 문항이 추가된 경우, 2차문헌의 출처를 밝히되, 내용적으로는 원저작자의 검사도구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만일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상 원저작자의 도구를 수정 보완한 경우에도, 원도구에서 어떻게 수정 보완되었는지를 밝히면서 원도구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26. 자신의 강연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논문을 게재할 경우 출처표시는 어떻게 하는가?

- ▷ 자신이 한 세미나 발표나 강연 내용이 이미 발표한 자신의 논문이나 단행본의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이를 다시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 해당되는 부분에 출처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세미나 발표나 강연 내용이 아직 어디에도 공식 출판된 적이 없고, 이를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한다면 출처표시 없이도 가능하다.

29. 연구 부정행위 가운데 “위조”에 해당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 ▷ 현행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 153호, 2015. 11. 3)에 의하면,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III장: 연구발표

31. 학위논문 심사과정에서 취소된 논문과 신규 논문 간 유사성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가?

- ▷ 출판이 중단된 논문은 정식논문이 아니므로 큰 문제가 안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중복게재를 잘 확인해야 한다.

32. 자신이 참여한 연구결과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타인이 발표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 ▷ 부당한 저자 표시(Authorship)와 관련하여 표절의 발생 소지가 있음.

35.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수정하여 재 투고한 경우, 편집위원장 권한으로 게재 판정이 가능한가?

- ▷ 일반적으로 처음 투고된 논문처럼 통상적인 심사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음.

42. 동일 저자의 다른 논문 2편에 실린 내용에 대한 자기표절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 ▷ 질문자가 제시한 두 논문은 동일한 환경(A)에서 출발하지만, 이에 적용한 기법이 다르고, 본문에서 논의하고 있는 대상과 방법이 다르므로 중복게재 또는 자기표절로 판단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 다만, 논문 2를 작성할 때, 이미 발표된 논문 1의 환경 A나 B기법 등 중복되는 중요한 부분이 활용되었다면, 반드시 이에 대한 출처를 밝혀야 한다. 비교되는 두 논문 사이에 가설의 일부가 같고, 샘플이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나 분석 및 해석의 초점이나 방향이 다르고 이에 대한 논의의 중점이나 결론이 다르다면, 그리고 두 논문에서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출처를 정확하게 밝혔다면 두 개의 논문은 실질적으로(substantially) 다른 논문이므로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IV장: 저자표시

49. 학위논문의 학술지 논문 재출판 과정에서의 지도교수 등의 저자권 부여 기준은 무엇인가?
- ▷ 학생이 제1저자, 지도교수가 공동저자(교신저자)로 되는 경우가 인정됨.
52. 단순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해 준 연구자에게도 저자권을 부여해야 하는가? 저자권을 가지기 위한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
- ▷ 단순 정보 제공자는 감사의 글(acknowledgement)로 적절하다.
56. 지도교수와 공동 연구한 결과가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되었는데 지도교수만이 저자로 등재된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된다. 지도교수가 속한 대학의 연구진실성 위원회에 증거를 모아 제보함.
57.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하여 학술지에 게재했는데, 지도교수가 주저자가 되고 학위논문 저자가 제2저자가 되고, 전혀 다른 교수가 교신저자로 오는 경우, 문제가 없는가?
- ▷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됨.

제V장: 중복게재

61. 승인된 학위논문을 출처를 밝히고 학술지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는가?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다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에 포함되는가?
- ▷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학위논문을 활용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출처를 밝히면 된다.
62. 학술대회에서 구두 혹은 포스터로 발표한 연구 내용을 정규 학술지에 출판할 경우 중복게재에 해당하는가?
- ▷ 아님.
63. 대학원생이 출판한 학술지 논문을 학위논문에 출처표기 없이 재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 ▷ 출처를 밝혀서 사용해야 함.

65.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내용을 심화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출판하는 것이 중복게재인가?
 ▷ 포스터 발표 → 논문 → 학술지 논문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중복게재는 아니다.
68. 학술지에 출판한 논문의 일부를 학위논문에서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 자기표절인가?
 ▷ 출처를 밝혀야 함. 이때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간의 재출판 또는 연구결과의 재사용은 중복게재 또는 자기표절이 아님.
75.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된 공동데이터를 가지고 연구 흐름과 연구의 방향이 다른 두 논문의 출판이 가능한가?
 ▷ 출처를 밝혀야 함. (의학 논문에 많음.)
76. 자신의 선행 논문에서 이론적 배경이나 연구방법론을 일부 문장이나 단락을 출처표기 없이 재사용한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포함되는가?
 ▷ 고의적인 자기표절은 아니다. 선행논문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음. 또한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함.
79. 학위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술지에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자기표절에 해당하는가?
 ▷ 학위논문은 학술지논문으로 투고 가능하다. 반드시 학위논문의 출처를 밝혀야 함.
80.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의 정의와 차이점은 무엇인가?
 ▷ 연구윤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중복게재(redundant publication)와 자기표절(self-plagiaris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쉽지 않다. 어떤 연구윤리 전문가는 자기표절의 한 유형으로 중복게재를 분류하기도 하며, 어떤 이는 거의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하며, 자기표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공존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두 용어는 “자신의 이전 저작물의 일부나 상당 부분을 이후의 자신의 저작물에서 활용할 때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이후의 저작물에서 마치 처음 사용하는 것처럼 독자를 혼란케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부당한 업적 인정을 받기 위해 활용하는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은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자신의 이전 연구 내용을 활용하여야 한다. 중복게재를 둘러싸고 연구자들 가운데에 있는 오해 중의 하나는 자신의 이전 연구 성과를 이후의 연구과정에서 활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학문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한 심화 및 확대된 연구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연구자는 자신의 이전 연구 성과를 활용하고자 할 때, 출처를 정확히 밝힌다면 결코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87. 출처를 밝혔음에도 중복게재 혹은 자기표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 출처표시가 정확하다면 된다. 가능하면, 요약, 변형, 재구성 또는 인용형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88. 논문의 구조와 형식이 비슷하고 연구방법과 범위가 같을 때 구조적 자기표절인가?
 ▷ 일단 구조적 자기표절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지만, 논문 쪼개기와 관련된 질문으로 파악된다. 중복

게재의 한 유형에 속하는 쪼개기 논문(fragmented publication) 또는 살라미 논문(salami publication)이란 일련의 연구를 수행한 후, 최소 출판 단위(least publication unit, LPU)로 나누어 두 편 이상으로 출판하는 것을 말한다. 즉, 대체로 연구 대상이나 연구 결과를 쪼개어 출판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논리적으로든 내용의 풍부성 및 완성도 측면에서든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 쪼개기가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러한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 논문 투고 전에 이렇게 나누어 논문을 작성해도 학술적 가치를 가진 독자적 논문으로 충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출판된 것과 중복되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출처를 표시하고 있는지 등 엄격하게 스스로 평가를 해 보아야 한다.

89. ISSN이 있는 프로시딩에 발표한 논문의 내용 전부를 학술지에 게재하면 중복게재인가?

- ▷ 중복게재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출처를 밝혔느냐 아니냐에 있다. 일반적으로 공식 출판된 자신의 선행 연구의 중요한 내용을 후속 연구에 활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중복게재로 본다. 물론 여기서 ‘공식 출판된 것’의 의미와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문 분야나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학위논문, 학술발표에서의 프로시딩, 연구결과 보고서를 공식적인 출판물로 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 있다. 본 사례의 경우, 학술대회 발표집(프로시딩)을 공식 출판된 간행물로 본다면, 여기에 있는 논문 전체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은 중복게재이다. 학술대회 발표집에 초록 형태로 되어 있고, 보통 초록의 내용이 전체 연구를 조망해 볼 수 있도록 중요한 데이터나 결론이 요약되어 있지만 논문 전체가 아니므로 이를 보완하거나 확대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 출처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중복게재로 판단하지 않는 학문 분야나 학술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인터넷이 발달한 현대의 연구 환경에서는 논문의 초록을 담은 프로시딩도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접근이 가능하기에 공식적인 출판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학술지 논문에서 다시 활용할 때에는 출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전 연구와 중복되는 부분을 다시 활용할 때 이것이 중복게재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술단체나 출판사가 자체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고 전에 해당 학술지의 편집인에게 이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자문을 구하여 그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91. 학술대회 요약 발표 후 학술지에 게재해도 되는가?

- ▷ 학술발표 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한 후, 이를 발전시켜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해당 학술지의 출판 정책(매뉴얼)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에 따르는 것이 좋다. 학술발표 대회를 위해 만든 자료집(프로시딩)의 성격 규정이나 이에 있는 내용을 활용한 학술지 논문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학회마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시딩은 비공식적인 출판물이므로 여기에 있는 자신의 발표 내용을 출처표시 없이 재활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프로시딩이지만, 동료 심사를 거친 논문이 게재되어 정규 학술지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고, 학술발표 대회 당일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만 자료집으로 한정적으로 배포되지 않고 학회 홈페이지 등에 탑재되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여 널리 인지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도 있으므로 여기에 있는 것을 가급적 출처를 표시하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학술지에 먼저 게재된 논문을 요약하여 학술대회에서 요약하여 발표한 경우, 해당 학술지는 공식적으로 출판된 것이므로 여기에 이미 게재된 것을 요약 발표한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92. 학위논문의 내용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자기표절인가?
 ▷ 출처 밝히기.
93. 처음 출판되었던 책의 출처를 표기한다 해도 중복게재 항목의 자기표절이 아닌가?
 ▷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다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자기표절 또는 중복게재인 것은 아니다. 이전에 발표 내지 출판된 자신의 저작물을 다시 활용하면서도 적절하게 출처표시를 하지 않아 마치 처음 발표하거나 새로운 것처럼 하였을 때 연구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제VI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95. 논문 표절 기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표절 검색 프로그램에서의 표절을 결정하는 유사도율(%)이나, 명확한 기준, 지침 등이 있는가?
 ▷ 표절 검색 프로그램의 유사율은 곧바로 표절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지는 못하며, 유사도가 높은 논문을 검출하거나 참고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유사율이 높아도 그것이 해당 분야에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이거나 일반적 지식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표절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낮은 유사도라 할지라도 타인의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면 표절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베이스에 비교 원문이 없다면 유사율은 표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표절 검색 프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사율이 곧바로 표절임을 나타낸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유사도를 지정하여 표절을 판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의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회가 해당 내용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종 판정하여야 한다. 정리하여 보자면 표절 검색 프로그램에서의 유사도(%)는 표절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식별함으로써, 본격적인 검증에 앞서 신속하게 그 유사도 정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실제로 표절로서의 판정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에서 밝힌 검증 절차에 의하여 검증 주체의 조사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가가 다각도의 조사 및 검토에 의하여 최종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98.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될 경우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
 ▷ 제보자가 보호되도록 장치화 되어 있다.
100. 지도교수와 학부생이 함께 연구한 내용을 학술지에 출판하면서 학부생이라는 이유로 저자에서 제외하고 논문을 투고하였다. 소속 기관에서는 해당 제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가?
 ▷ 저자가 저자 자격 기준을 충족한다면 학부생이라도 공저자로 등재 가능하다. 학부생을 제외시키면 연구윤리 위반이다.
103.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가 남아 있는 대학의 경우, 5년 이전의 학위논문은 검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 현행 교육부의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하면,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시효는 없다. 그렇지만 많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에는 아직도 검증 시효를 두고 있어,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시의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다.

106. 학위논문의 내용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이 논문이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밝혀도 자기표절인가?

▷ 자기표절이 아님.

113. 연구부정행위 검증에서 자기표절 및 표절을 어떻게 판정하는가?

▷ 일반적으로 연구부정행위를 판단할 때에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바, 그 중 대표적인 점은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관련 지침의 유무, 학계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및 수준, 그리고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하는 것이다.

121. 표절의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표절에 대한 검증시효가 있는가?

▷ 일반적으로 학술적 저작물에서 출판되었든 출판되지 않았든 저작물의 요건을 갖고 있는 것은 표절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저작물의 요건이란 저작자 자신의 것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어야 하며,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검증시효는 없으므로 과거 모든 연구부정행위도 해당된다.

제Ⅵ장: IRB

123. 사회적약자 대상 연구에서의 연구절차 및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 개인정보 보호, 설문참여 실비 제공, 익명화, 자발적 동의 얻기

132. 인간대상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정확한 나이는 무엇인가? (0)

▷ 2013년에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연구자는 인간 대상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 대상자로부터 연구의 목적,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 개인정보 보호, 손실에 대한 보상,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기타 IRB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연구 대상자가 연구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안정한 사람일 경우, 연구자는 법정 대리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순으로 되어 있는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18세 미만의 사람인 미성년자로서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안정한 사람인 아동의 경우가 문제가 된다(아동복지법, 법률 제14085호, 2016. 3. 22 일부개정, 제3조 1항).

138. 유아들을 대상으로 CCTV 촬영을 통한 연구를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 전형적인 인간 대상 연구이므로 반드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IRB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CCTV를 통한 촬영을 하므로 개인식별 정보가 수집되어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위험성이 없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되며, 심의 면제 대상은 아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서면 동의를 반드시 있어야 하며, 학교장의 CCTV 설치를 통한 연구의 허가도 있어야 함.

初等相談研究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제 16 권 제 4 호

2017년 10월

목 차

학업질서 연구가 학업상담 실재에 주는 함의 탐색	황매향 / 357
‘초등상담연구’ 학술지 논문에 나타난 초등학교 상담 연구 동향 분석	조영표 · 손현종 / 385
초등학생의 자기가치 판단근거에 대한 함의적 질적 연구	김현영 · 김혜숙 / 411
초등학생의 자기조질력 향상을 위한 긍정적 타당어모 실험연구	기운옥 · 오익수 / 437
아동의 인지적 취약성이 무릎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 효과	김유경 · 홍성형 / 457
세종특별자치시 진학 초등학생의 생활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	김사다 · 조봉환 · 박이진 / 481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

The Korean Elementary Counselor Education Association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의 初等相談研究 규정

1. 초등상담연구 원고 투고 규정

제 정: 2001. 01. 22.
제6차 개정: 2017. 03. 30.

2. 초등상담연구 편집 규정

제7조 (학회지의 내용) 본 학회지(초등상담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논문을 게재한다.

1. 초등상담에 관련된 제 분야의 학술논문
2. 본 학회 주최의 강연, 세미나 또는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

3. 초등상담연구 발간 규정

4. 초등상담연구 연구윤리 관련 규정

제 1장 (목적)

본 규정은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의 연구윤리 정립을 위하여 연구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 2장 (적용대상)

제 3조 (연구의 진실성)

1. 연구자는 연구 아이디어의 창출, 진행, 결과의 도출 등에서 정직해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의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연구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 4조 (연구의 부정행위)

연구의 부정행위란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중복 게재 등을 말한다.

1. '위조'는 연구결과를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허위로 날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에 동원된 가설, 방법, 자료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변경한 경우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및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이 없이 도용한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기여도 없이 타인의 연구결과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중복 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 5조 (연구의 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1. (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투고자는 논문 표절방지시스템(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 등을 활용한 표절 검증 결과(논문 유사도)를 편집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2. (진실성 검증 시효)
 -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진실성 검증 원칙)
4. (진실성 검증 절차)
5. (예비조사)
6. (본 조사)
7. (판정)
8. (조사결과의 보고)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 종료 및 판정후 각각 1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6. 관련 증거 및 증인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 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회장이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담당한다.
3. 위원은 5인 이상 8인 이하로 하며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학회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7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임무)

1. 본 학회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제정, 개정, 해석한다.
2.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심의하고 판정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은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조 (연구 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1. 연구 윤리 위반자에게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통보한다.
2. 연구 윤리 위반 논문은 게재를 철회하고 게재 무효를 학술지에 공고한다.
3. 연구 윤리 위반자는 향후 3년 이내 학회지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부칙

초등상담연구 연구윤리 관련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 2017년 2월 17일 개정 시행한다.

참고문헌

한국연구재단(2016).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대전: 세종디자인기획인쇄.

한국연구재단(2015).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대전: 세종디자인기획인쇄

한국초등상담교육학회(2017). 초등상담연구 원고투고규정. 초등상담연구, 제16(4), pp495-507.